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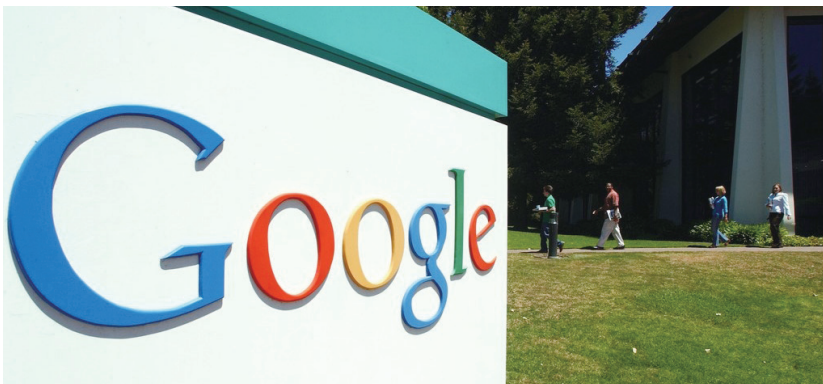


글. 박문석
영남대 E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최근 유럽에서 논란되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

2012년 1월 24일 Google은 기존의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으로는 이용자가 Google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고,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하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함)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기관들은 인터넷

거인 Google이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많은 Google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Google의 일방적인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이 발표된 직후 유럽에서는 Google이 EU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이하 'EU지침'으로 함)과 회원국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Google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이용자를 위해 Google 서비스에서 정보공유를 거부할 수도 있고, 온라인 맞춤

형 광고에 대해서 이용자가 수정 및 해제할 수 있고, 또한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번 새로운 통합정책에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Dashboard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모든 Google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사용현황을 검토·설정·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 통합과정에서의 잠정동의에 대한 Opt-Out(사후철회)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기관들이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는 당국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Article 29 Working Party(이하 ‘WP29’으로 함)는 Google이 발표한 새로운 통합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실무그룹(ad hoc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CNIL)로 하여금 새로운 통합정책에 관해 Google과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2012년 2월 2일 WP29는 Google에게 임시실무그룹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통합정책의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oogle은 WP29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 CNIL은 “새로운 통합정책에 관한 논의를 Google과 하도록 WP29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며, 우리의 사전 조사결과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지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니 그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또한 “Google이 발표한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관계 당국들과 광범위한 사전심의를 거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의한 바 없으며, 일부 정보보호기관은 발표일에 임박하여 관련내용을 제공받아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Google에게 보냈다.

이러한 CNIL의 시행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1일 Google검색엔진, 유튜브, 캘린더, Google토크, G메일, Google+, Picasa, Google맵스, 스마트기기OS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등 60여 개 이상의 Google 서비스에서 시행하던 각기 다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Google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통합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CNIL은 3월 16일에 Google에 대해 일방적 시행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총 69개의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내어 Google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5월 22일에도 CNIL은 Google에게 추가질의를 담은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CNIL의 질의 서신에 대해 4월 20일과 6월 21일에 Google은 답신을 보내왔으나 CNIL은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NIL과 Google간의 서신을 통한 새로운 통합정책에 관한 논의과정을 지켜본 WP29는 2012년 10월 16일 WP29의 27개국 개인정보보호기관 당국자가 서명한 서신을 Google에 전달하였는데,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Google이 EU지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WP29의 결론을 담고 있었다. 11월 21일에 CNIL은 Google이 2013년 2월 15일 전까지 WP29의 권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양측 간에 더 많은 의견이 오간 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함부르크 주 정부의 정보보호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상대표들과 Google은 CNIL 사무국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에 Google은 자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013년 3월 26일 서신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29일 WP29를 대표해서 조사를 진행해온 CNIL은 Google의 제안이 EU지침을 준수하기에는 상세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CNIL의 Google의 제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4월 2일에 위의 유럽 6개국 정보보호기관은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이 EU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2013년 11월 28일 네덜란드 CBP가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네덜란드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12월 19일 스페인 AEPD의 Google에 대한 90만 유로의 과징금부과 결정이 있었고, 2014년 1월 8일 프랑스 CNIL의 15만 유로 과징금부과 결정 발표가 이어지는 등 유럽에서는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Google에게 제재결정을 내린 네덜란드 CBP, 스페인 AEPD, 프랑스 CNIL의 제재결정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Google의 반응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네덜란드 CBP, Google의 정보보호법 위반결정

2013년 11월 28일 네덜란드 정보보호국(College bescherming persoonsgegevens : 이하 'CBP')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College Bescherming Persoonsgegevens (CBP) in the Netherlands. The page is titled "CBP: Privacyvoorwaarden Google in strijd met de wet" (CBP: Google's privacy conditions in conflict with the law). The main text, dated 28 November 2013, states that the CBP has concluded that Google's privacy policy, effective from 1 March 2012, is in conflict with the Dutch Data Protection Act (Wbp). The CBP found that Google collects and processes personal data from internet users without their explicit consent, which is prohibited under the law. The CBP has issued a formal notice to Google and is preparing for a hearing to discuss the matter. The page also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and a search bar.

네덜란드 정보보호국(CBP)의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Google 정보보호법 위반결정내용 캡처
(출처 : CBP 홈페이지[http://www.cbpreweb.nl/Pages/pb_20131128-google-privacybeleid.aspx], 2013년 11월 28일자)

로 함(영문약칭은 DPA))은 Google이 이용자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도 없이 그리고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서 Google이 제공하는 각기 다른 모든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다는 자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1일 Google의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시행된 이후 Google에 의해 결합된 개인정보는 네덜란드 정보보호법(Wet be-



네덜란드 정보보호국(CBP)의 Google 정보보호법 위반결정을 보도한 네덜란드 공영방송 인터넷판 기사 캡처 (출처 : NOS, 「CBP: Google overtreedt wet」(<http://nos.nl/artikel/580320-cbp-google-overtreedt-wet.html>), 2013년 11월 28일자)

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CBP의 Jacob Kohnstamm 의장은 “Google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고 있으며, 이것은 네덜란드 정보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CBP는 Google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 Google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브뤼셀에 있는 Google 유럽본부의 대변인은 “Google은 EU법을 준수하며 간단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CBP의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Google의 입장을 밝혔다.

스페인 AEPD, Google에 과징금 90만 유로 부과

네덜란드 CBP에 이어 스페인 정보보호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 이하 ‘AEPD’로 함)도

Google이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무기한 보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Google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2013년 12월 19일 발표하였다.

AEPD의 구체적 제재내용과 이유를 살펴보면, AEPD는 Google이 스페인정보보호법(la normativ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 이하 ‘LOPD’로 함)상의 개인정보보호조항 3개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Google의 3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3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90만 유로(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결정을 함과 동시에 Google이 신속히 LOPD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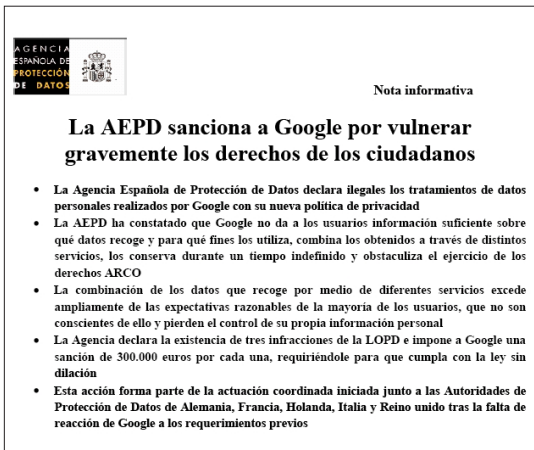
AEPD가 제재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Google의 3가지 LOPD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Google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을 위해 수집·사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둘째, Google은 새로운 통

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합리적 기대를 방해하였다. 셋째, Google은 수집 및 결합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무기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규정한 LOPD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AEPD는 스페인헌법 제18조와 LOPD에 의해 보장되는 ARCO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접근(Acceso)권, 개인정보수정(Rectificación)권, 개인정보취소(Cancelación) 및 반대(Oposición)권을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이 방해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스페인법규범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AEPD의 제재결정에 대해 Google은 “우리의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이용자에게 훨씬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지를 AEPD에 설명하고자 한다.”며 “AEPD의 제재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고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CNIL, Google에 과징금 15만 유로 부과
스페인 AEPD의 Google에 대한 과징금부과 결정이 내려진 20여 일 후 WP29의 위임을 받아 Google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프랑스의 정보보호위원회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 정보화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은 Google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인 15만 유로(약 2억 2000만원)를 부과한다고 2014년 1월 8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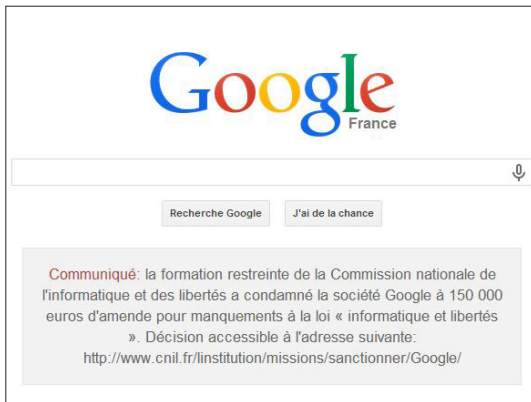
2014년 1월 3일 CNIL의 제재위원회는 Google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프랑스 정보보호법(Loi no 78-17 du 6 janvier 1978 modifiée)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수집에 있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개인정보수집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의 Google에 대한 제재결정내용 캡처 (출처 : AEPD 홈페이지[http://www.agpd.es/portalwebAGPD/revista_prensa/revista_prensa/2013/notas_prensa/common/diciembre/131219_NP_AEPD_POL_PRIV_GOOGLE.pdf], 2013년 12월 19일)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이 Google에게 90만 유로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는 기사 (출처 : El Pais, 「Sanción a Google por vulnerar derechos del ciudadano」(http://tecnologia.elpais.com/tecnologia/2013/12/19/actualidad/1387450618_053467.html), 2013년 12월 19일자)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 캡처
 "공식발표 :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재위원회는 프랑스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Google에 1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아래의 인터넷주소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www.cnil.fr/institution/missions/sanctionner/Google/>." (출처 :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www.google.fr], 2014년 2월 8일)

은 "우리는 그동안 60개가 넘는 Google 서비스에 적용되던 서로 다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하나로 관리하는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CNIL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법 및 EU회원국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다."라며 이

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에 관해서 보존기간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프랑스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결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CNIL은 Google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정보보호법 제 45조의 I (I de l'article 45)에 근거해서 Google에게 15만 유로의 과징금부과 결정과, 결정서를 수령한 후 8일 이내에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www.google.fr)에 오전 8시부터 연속해서 48시간 동안 Google에 대한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 발표가 있는 후 Google

은 "우리는 그동안 60개가 넘는 Google 서비스에 적용되던 서로 다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하나로 관리하는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CNIL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법 및 EU회원국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다."라며 이번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14일 Google은 이번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명령이 Google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CNIL의 제재결정 중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제기하였다. 이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2월 7일 Google의 청구에 대해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Google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해 Google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 게시명령에 Google이 제기한 효력정지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Google은 최고행정법원의 결정과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 게시명령을 준수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Googl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기사 캡처 (출처 : Le Monde, 「Le Conseil d'Etat rejette une requête de Google contre la CNIL」(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4/02/07/le-conseil-d-etat-rejette-une-requete-de-google-contre-la-cnil_4362485_651865.html), 2014년 2월 7일자)

겠다고 하면서도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2월 8일 Google은 CNIL의 결정문에서 제시하고 과징금부과 결정의 게시방법에 따라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Recherche Google”과 “J’ai de la Chance”의 버튼 바로 아래에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게시하였다. 이날 오전에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이 Google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CNIL의 제재결정내용을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CNIL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오전 한때 다운되기도 하였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유럽국가의 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에서는 Google에 대한 과징금 등의 법적 제재가 시작되었다. 또한, 2013년 4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관과 함께 Google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한 영국·독일·이탈리아의 개인정보보호기관들도 빠르면 올해 안으로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터넷 빅브라더로 평가되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와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규범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멈추게 될 것이며, EU와 회원국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Google은 새로운 서비스제공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을 유럽에서 실현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유럽에서의 Google Street View에 의한 사생활침해 논란

Google이 유럽에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은 앞에서 언급한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의 시행만이 아니다. 2007년 5월 미국에서 처음 Google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 : 이하 ‘GSV’로 함)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거리사진정보에 담긴 신원이 확인되는 난처한 사람의 모습과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는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활동모습, 그리고 특정 거리와 건물번호 및 자동차번호 등과 결부되어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사진정보가 적나라하게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면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Google은 “거리사진정보에서 담긴 사람의 얼굴이나 집주소 또는 자동차번호 등의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 모자이크처리나 사진을 흐릿하게 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GSV에서 제공되는 사진정보를 원치 않는 사진 속 관계자의 삭제요구를 보장하는 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10년 GSV의 사생활침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GSV서비스를 위해 거리모습사진을 촬영하는 GSV특수차량이 촬영 주변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데이터전송시스템(Wi-Fi)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로그ID, 비밀번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MAC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등을 GSV특수차량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였다. CNIL은 2010년 6월 4일 Google로부터 GSV촬영사진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와 서버접속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ID·패스워드·로그인 정보·이메일 등이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Google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GSV특수차량으로 이메일·이용자이름·비밀번호·사진·동영상·서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해왔다.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Google은 “우리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Google은 GSV특수차량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였다. 이하에서는 CNIL과 독일의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가 Google이 GSV특수차량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것에 대한 제재결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21일 CNIL은 GSV와 관련하여 Google에 10만 유로(약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3월 17일 CNIL은 Google이 위치기반 서비스인 Google맵스의 GSV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 Wi-Fi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CNIL은 프랑스 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일련의 현장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검사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 없이 Wi-Fi정보(ID·패스워드·로그인 정보·이메일 등)를 수집하는 등 Google의 다양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CNIL은 2010년 5월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Google에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요청을 Google이 즉시 응답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2011년 3월 17일 CNIL 제재위원회는 Google

Protéger les données personnelles, accompagner l'innovation, préserver les libertés individuelles



Rechercher un article, fiche, démarche...

L'INSTITUTION
VOS DROITS
VOS OBLIGATIONS
LES THÈMES
DOCUMENTATION

Accueil > L'institution > Actu CNIL > Article > Google "Street View" : la CNIL prononce une amende de 100 000 euros

L'INSTITUTION

ACTU CNIL

- > Agenda
- > Infos séances
- > Lettre InfoCNIL
- > Espace presse
- > Fils RSS

QUI SOMMES NOUS ?

MISSIONS

INTERNATIONAL

INNOVATION ET PROSPECTIVE

LABELS CNIL

Article



Google "Street View" : la CNIL prononce une amende de 100 000 euros

21 mars 2011



La société Google procède depuis plusieurs années à la collecte massive de données techniques sur les réseaux Wi-Fi, aux fins d'offrir des services de géolocalisation (notamment les services Google Maps, Street View et Latitude). La CNIL a mené une série de contrôles sur place afin de vérifier la conformité de ces traitements à la loi "informatique et libertés". Ces contrôles ont révélé divers manquements comme la collecte de données Wi-Fi à l'insu des personnes concernées et la captation de données dite "de contenu" (identifiants, mots de passe, données de connexion, échanges de courriels). La CNIL a donc mis en demeure la société GOOGLE, en mai 2010, de régulariser sa situation. Estimant qu'il n'avait pas été répondu à ses demandes dans les délais impartis, la formation contentieuse de la CNIL a prononcé à l'encontre de la société, le 17 mars 2011, une amende de 100 000€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CNIL)의 Google 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한 10만 유로 과징금부과 발표내용 캡처
 (출처 : CNIL 홈페이지[http://www.cnil.fr/institution/actualite/article/article/google-street-view-la-cnil-prononce-une-amende-de-100-000-euros/]. 2011년 3월 21일자)



독일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의 Google에 대한 14만 5천 유로 과징금부과 발표내용 캡처(출처 : HmbBfDI 홈페이지 [http://www.datenschutz-hamburg.de/news/detail/article/bussgeld-gegen-google-festgesetzt.html], 2013년 4월 22일자)

에 대해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3년 4월 22일 독일 ‘데이터보호와 정보의 자유를 위한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 : 이하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로 함)는 Google이 Wi-Fi네트워크의 불법적인 녹취행위에 대해 Google에게 14만 5천 유로(약 2억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Google은 GSV서비스를 위해 거리와 집의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동시에 GSV특수차량의 촬영범위 이내에서 Wi-Fi네트워크의 전파를 탐색하였다. ‘GSV특수차량의 촬영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Wi-Fi네트워크의 정보를 기록해 왔다’는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Google은 인정하였다. Google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복사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Google의 인정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의 Johannes Caspar 위원장은 “Wi-Fi네트워크를 통해 기록된 정보 중에는 이메일, 패스워드, 사진, 채팅프로토콜 등과 같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Google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인정하고, 위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 또한 Johannes Caspar 위원장은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위반에 이렇게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한 현재 법규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위 과징금부과 결정을 평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함)도 Google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지역의 거리모습을 담은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은 Wi-Fi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60만 건의 MAC주소를 무단을 수집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이라며 글로벌 기업 Google에 대해 과징금(약 2억 12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또한, 동의 없이 수집한 모든 관련 개인정보의 삭제와 삭제과정에 대해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정조치명령도 함께 의결하였다. 그리고 Google에게 CNIL과 같이 한국판 Google 홈페이지에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통위의 조치는 글로벌 기업 Google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불법적인 일련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조치들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Google은 인터넷 및 모바일시장에서 최고의 IT기술로 시장을 장악하고 Google만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통해 IT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자신의 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Google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Google이 여전히 인터넷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예측은 Google의 사훈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의 반대추론을 통해 예전부터 예측되었다.

이처럼 Google이 인터넷에서 빅브라더라는 별칭에 만족하지 않고 빅브라더를 넘어 빅 GOD(네티즌사이에서는 'Google神'으로 지칭되기도 함)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EU와 유럽국가들이 보여준 일련의 Google에 대한 제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그동안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과 관계기관의 대응 및 정책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유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방통위의 Google에 대한 제재는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Google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각국의 정부 및 Google 이용자와 네티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쌓아야만 진정한 인터넷의 거인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에게 Google이 'Don't be worry.'라고 외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